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

채납자가 채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채납자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채납자에 대해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56조의3제1항).

전자등록기관,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등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			
채 납 자	성 명 호 (상 호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압류재산의 표시				
압 류 일		년 월 일		
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				(단위: 원)
세목코드	발행번호	연도·기분	내국세	농어촌특별세
세 목	납부기한	계	교육세	가 산 금

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채납자에게 계좌대체 또는 전자등록말소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(「국세징수법」 제43조제3항)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

귀하(귀사)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전자등록주식등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56조의3제2항).

체납자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 (사업장)			
전자등록기관,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등	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			
압류재산의 표시				
압류일		년 월 일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(단위: 원)				
세목코드	발행번호	연도·기분	내국세	농어촌특별세
세목	납부기한	계	교육세	가산금

끝.

발신명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

안 내 말 씀

※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(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, 30일 내 처리)을 거쳐 심사청구(국세청, 90일 내 처리) 또는 심판청구(조세심판원, 90일 내 처리)를 하거나,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[국세정보 > 납세서비스 > 납세자권리구제]를 참고하거나,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,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,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